

# 「2025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」 변경 공고

「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대·변경 공고합니다.

2025년 08월 01일

시 흥 시 장

## 1. 지원개요

- 용자규모 : (기존)600억원 → (변경)700억원 ※ 분야별 자금 소진시 전환사용
  - 일반자금 - 600억원
  - 특별자금 - 50억원 (창업사업화자금)
  - 재해자금 - 50억원
- 용자한도 : 운전자금 3억, 특별자금 1억, 재해자금 5억

구 분	재무제표	용자한도	사업운영 기간	비 고
운전자금	발급가능 기업	업체당 3억원	1년 이상 ~	
특별자금 (창업사업화)	발급가능 기업		1년 이상 ~ 7년 이내	
	발급불가 기업	업체당 1억원	1년 미만	서류평가 완화
재해자금	무관	업체당 5억원 (피해금액 범위)	3개월 이상	

- 용자기간 : 1 ~ 5년 중 신청 기업이 기간 선택

기 간 별	1년	2년	3년	4년(재해자금)	5년(재해자금)
상환방법	일시상환	일시상환	일시 또는 1년거치 2년균분상환	일시 또는 1년거치 3년 균분상환	일시 또는 1년거치 4년 균분상환

□ 이차보전율 : 0.5 ~ 3.0% (특별, 우대지원 포함) / 5% (재해자금)

이차보전율 (기본)	○ 대출 금리별 누진적용 이차보전율 조정											
	은행금리 구간	이차보전율	특별보전율	은행금리 구간	이차보전율	특별보전율						
	~ 2.5%	0.5%	창업기업 대상 추가 보전율	5.01% ~ 5.50%	1.7%	창업기업 대상 추가 보전율						
	2.51% ~ 3.00%	0.7%		5.51% ~ 6.00%	1.9%							
	3.01% ~ 3.50%	1.0%		6.01% ~ 6.50%	2.1%							
	3.51% ~ 4.00%	1.2%		6.51% ~ 7.00%	2.3%							
	4.01% ~ 4.50%	1.5%		7.01% ~	2.5%							
4.51% ~ 5.00%	1.6%	-	재해자금 이차보전율 5%									
※ 특별보전율 : 특별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대상 추가 지원되는 보전율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1% / 7년 이내 창업기업 0.5% ※ 재해자금 이차보전율 : 재해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*의 경우, 5%												
우대지원 (0.5%)	■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 ■ 상시근로자 증가 기업 ('23~'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text-align:center;"> <tr> <td>20인 이하</td> <td>1인 이상</td> <td>21~50인</td> <td>2인 이상</td> <td>51인 이상</td> <td>3인 이상</td> </tr> </table> ■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시흥시 여성친화기업, 시흥시 청년친화기업 ■ 시흥시 최고경영인·근로인 소재기업(1회지원에 한함) ■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(근로자 관내거주 비율 50% 이상)						20인 이하	1인 이상	21~50인	2인 이상	51인 이상	3인 이상
20인 이하	1인 이상	21~50인	2인 이상	51인 이상	3인 이상							

※ 재해 중소기업 :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6개월이내 「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」 제2조 및 16조 규정에 따라 재해로 인한 손실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발급 받은 재해 중소기업

※ 재해자금 외 이차 보전율은 3.0%를 초과할 수 없음(기본 이차 보전율 2.5% + 특별보전율 1% = 실제 적용 3%)

□ 지원대상

- 일반자금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업체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
  -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(전업률 30% 이상)
  -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,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'공장' 또는 '제2종 근린생활시설(제조업소)'인 기업(전업률 30% 이상)
  - 관내 지식산업센터,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(제조업종)
  - 지식기반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

분류 코드	세부 업종명	세 부 설 명
58221	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운영체제(OS) 개발, 시스템관리(SMS)S/W 개발</li> <li>■ DBMS 개발, 보안프로그램 개발</li> <li>■ 프로그래밍언어 개발</li> <li>■ 임베디드용시스템S/W 개발</li> </ul>
58222	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통계처리프로그램 개발, 사무용S/W 개발</li> <li>■ 회계용S/W 개발, 기업관리용(ERP)S/W 개발</li> <li>■ 임베디드용 응용S/W 개발</li> </ul>
70121	전기·전자공학 연구개발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</li> </ul>
70129	기타공학 연구개발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화학공학.해양공학.항공공학.기계공학 연구</li> <li>■ 환경공학.핵공학.조선공학 연구</li> <li>■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</li> <li>■ 산업 및 시스템공학 연구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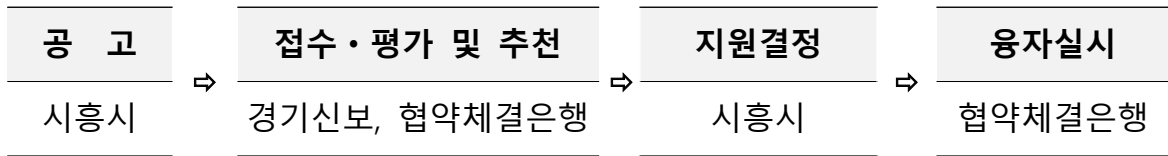
- 창업사업화자금: 일반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(접수일기준)인 중소기업
  - ※ 사업개시일 기준 : 개인기업 - 사업자등록일 / 법인기업 - 법인설립등기일
  - ※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공장, 제조시설 등 구비되어있어야 함.
- 재해자금: 「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」제 2조 및 16조 규정에 따른 재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으로,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재해로 인한 손실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기업

□ 지원 제외대상

-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 30% 미만인 기업
-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.폐업중인 기업
-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(지원대상별 상이)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 완료되지 않은 업체
-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(3억원)를 초과하는 기업
-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시흥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기업
- 타 시·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
- 연속지원\* 받은 기업 (1년간 지원 제외)
  - ※ 연속지원 :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

## 2. 자금지원 절차

### □ 지원절차



### □ 서류 접수·평가

- 평가기관 :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(기업, 신한, 국민, 농협, 우리, 하나, 대구)  
※ 신청 전 용자취급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
- 평가항목 : 재무항목(50점), 비재무항목(50점), 가산점(10점)

### □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

- 평가 결과 30점 이상 업체에 지원 결정 후 업체별 개별 통보
- 용자취급기간 :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※ 미대출시 자동실효

### □ 유의사항

-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지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,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
- 용자에 따른 대출담보, 이자불입, 상환방법 등은 용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바에 따름
- 자금 사용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
- 업체명, 대표자, 사업장 소재지,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·제출해야 함.
- 용자금 목적 외 사용, 휴·폐업 또는 타 시·군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및 용자금 환수 조치되며, 추후 동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.
-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## 3. 접수 및 제출서류

□ 신청기간 : 자금 소진시까지

□ 접수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  
(기업, 신한, 국민, 농협, 우리, 하나, 대구)

□ 문의처 :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(☎ 031-310-6096)

## □ 제출서류

\*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

구분	제출서류명	비고
필수 서류	① 웅자신청서 (사업운영실태서 포함) 【서식 1~4】	
	② 사업자등록증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 ※ 공장미등록 업체 : 임대차계약서(입주확인서), 건축물대장 제출 ※ 공장등록 업체 : 공장등록증명서	
	③ 법인등기부등본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	
	④ 최근 2개년 간 재무제표(※ 회계사·세무사 직인날인 필), 제조원가 명세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※ 사업개시 2년 미만 업체 : 추정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각 1부 ※ 개인 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주민(법인)등록번호 란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숫자를 삭제 후 제출	
	⑤ 금융거래 사실확인서	용자실행은행 발급
	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	
	⑦ 사실증명원, 사실증명원 상 등록 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일체	창업기업에 한함 세무서 발급
	⑧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등 재해로 인한 손실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(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)	재해자금에 한함
기타 증빙 서류	① 비재무적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내외 표준규격 획득 증명서</li> <li>• 특허권, 실용신안권 등록증명서</li> <li>• INO-BIZ기업, MAIN-BIZ기업 증명서 (중소벤처기업부 발급)</li> <li>• 벤처기업 확인서 (중기부, 기술보증기금, 한국벤처캐피탈협회)</li> <li>•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정서</li> <li>• 부품소재 전문기업 지정서, 뿌리기술전문기업(확인서 및 지정서)</li> <li>• 녹색인증기업, 경기도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서, 가족친화기업 인증서(여성가족부), 사회적기업 인증서류(고용노동부)</li> <li>• 우수 Green-Biz 인증기업 인증서류</li> <li>• 노동부장관 지정 노사협력우량기업</li> <li>•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계약서(한국무역협회 세관확인 등, 2024년)</li> <li>• 시흥시 최고경영인, 근로인 수상 입증서류(2021년 ~)</li> <li>• 중소기업대상 수상 입증서류(2021년 ~)</li> <li>•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증명서(2021년 ~)</li> <li>• 소재지가 관내 위치한 사회단체 봉사활동, 기부확인서(2024년 ~)</li> <li>•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여부 관련서류 (상시근로자 50명이상 3.1%이상 장애인 고용) 및 장애인 고용우수 사업주 인증서류</li> </ul> ② 가산점 항목을 입증하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입주업체(점수산정기준표 표기)</li> <li>•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기업 (에너지관리공단 인증)</li> <li>•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업체 증빙서류</li> <li>•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증빙서류</li> <li>• 2024년 시흥시 채용박람회, 경기도 채용박람회 참여확인서 (증빙서류-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확인서 발급)</li> <li>• 시흥상공회의소 추천서류</li> <li>• 시루 구매 영수증 (회사 또는 대표 명의, 2024년 ~)</li> </ul> ③ 우대지원을 입증하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</li> <li>• 상시근로자 증가기업(2023, 2024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)</li> <li>•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확인서(smpp.go.kr에서 발급)</li> <li>•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(여성가족부)</li> <li>• 시흥시 여성친화기업, 시흥시 청년친화기업(협약서)</li> <li>•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 →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, 주민등록등본(주소확인용),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(주소확인용) 등 입증자료 (시청 접수날짜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)</li> </ul>	해당업체만 제출